가칭 **"성매매알선등범죄의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징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사항과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 행위자"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징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성매매된 자"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징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4. "성적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징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5. "성매매알선 등 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징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6. "시설 등 이용자"라 함은 성매매된자, 성매매행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5조,제10조**에서 정한 시설 및 상담소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의 방지와 성매매된 자의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행위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및 홍보
2. 성매매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 운영 및 기타 관련 서비스의 제공
3. 성매매된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정기 실태조사(신 설)
4. 성매매행위 및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5. 성매매행위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6. 성매매행위 예방을 위한 각급 학교기관, 군에서의 교육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관계법령과 법 집행에 대한 직무교육
7. 성매매된 자인 외국인 여성의 보호와 국제간 성적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형사제도의 강화 및 국제공조

제4조(국가간 성적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 여성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관기관은 국제적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거나 입국하려는 자중 타인의 여권을 소지한 자 기타 외국인 여성의 여권을 소지한 자에 대한 "성적 인신매매 혐의자"인지 여부의 확인 및 범죄수사의 개시
2. 국가간 성적 인신매매의 경로와 범죄 조직, 범죄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조사
3.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매매된 자인 외국인의 여권을 소지하는 업주나 중개인 기타 알선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과 그 피해자인 외국인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제2장 지원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제5조(시설의 종류)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지원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지원시설 :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중 이용희망자,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3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설
 * 현장에서 너무 짧다는 의견을 반영함 : 여성부안도 3개월로 되어 있음.
 *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2. 자립지원시설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시설 이용자로서 희망자,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등(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6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설. 이 경우 이용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청소년 지원 시설 : 제2호에서 규정한 자립지원시설 이용해당자가 청소년인 경우 성년에 달할 때까지 숙식,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등교육 과정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중등교육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제6조(시설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된 자 및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집행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 시설"이라 한다)을 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및 도별로 제5조에서 정한 각 시설을 1개 이상씩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시설의 명칭,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의 업무) ①일시지원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숙식의 제공
2. 개인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4. 신변보호
5.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관련 지원
②자립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립자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시와 취업정보서비스 연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급부 및 각종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 제공
3. 기술교육(위탁교육 및 연계교육 포함)
4. 자녀 동반시의 보육 지원 및 필요시 모자복지법상의 모자자립시설에의 연계 지원
5. 기타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 제1,2항의 시설은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상담업무를 병행 실시한다.

제8조(시설 사용 자격 등) ①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는 제5조에서 정한 시설 입소에 관계없이 당해 시설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자중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상담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시설이용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퇴소 및 이용 중단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시설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단체 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조치 또는 이용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정한 자는 제5조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1회에 한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20세에 달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운영) ①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 정보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입소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질병 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기타 시설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여성복지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과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상담소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수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 ①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장방문 등 상담
2. 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시설에의 연계
3. 법률 정보 제공 및 법률 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상담소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상담소의 상담원은 상담관련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사법경찰관리의 지원)

사법경찰관리는 여성복지상담소의 현장방문상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료기관 지정) ① 여성부 장관은 제5조에서 정한 시설의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을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은 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이용자에 대한 질병치료, 보건상담 및 지도 등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 이용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의 특례) ①성매매된 자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형사처분이 면제된 자로서 입소자를 포함한 일체의 시설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동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 시설입소와 관계없이 시설이용자(서비스이용자)가 수급권자로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②위 항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중 생계급여는 당해

시설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시설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지급한다.
③시설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장은 즉시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중단한다.
④기타 위 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용의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단,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1,3,6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예산은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여야할 비용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여성부장관은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시설·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5조의 시설 및 제10조의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을 출입하여 시설·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목적, 일시 등을 시설 및 상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6조 또는 제10조에 의해 신고한 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시설이 아니면 여성복지상담소, 일시지원시설, 자립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상담소나 지원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상담소나 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시설의 폐쇄 등) ①시·도지사는 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5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을 침해하거나 이용권을 박탈, 제한하는 경우 및 부정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지급 받게 하거나 지급 받는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18조,제19조 제20조를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종류와 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 장 행정처분 및 벌칙

제24조(행정처분) ①관할 시, 군, 구청장은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의 장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되는 장소에 관하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제외한 기타 제11조, 12조, 제13조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 행위의 장소

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시설 등 폐쇄명령,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제1,2항의 범죄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폐쇄명령을 받은 자 및 그 소유자는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사 업소를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개설할 수 없다.

⑤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3년간, 기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및 그 소유자는 동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동종 또는 유사 업소를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개설할 수 없다.

⑥ 수사기관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범죄행위자의 인적 사항 및 조치결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상자료를 전산관리하고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야 한다.

⑦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흥접객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에 대한 인,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자가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3.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제19조,제20조를 위반한 자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벌금형을 병과 한다.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3. 제21조 제1항 제2,3호를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善導保護施設"을 **"성매매알선등범죄의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제16조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5조제1호·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4條”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10조” 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